정정 안내

다음과 같은 오류내용이 있어 정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조세법전」

해당면	오류내용(당초수록)	수정한 내용
P.55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12.31 개정) 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5년 12월 31일……2008년 12월 31일……2005년 12월 31일……(2003.12.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12.31 개정) 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5년 12월 31일……2008년 12월 31일……2005년 12월 31일……**2005년 12월 31일**……(2003.12.30 개정)

해당면	오류내용(당초수록) → 수정한 내용
P.3671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2000.12.29 개정) 구 분 / 세 율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1976.12.31 신설) 구 분 / 세 율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할 /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표 바꿈**